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3. 7.

영 동 군



○ 공고기간 : 2019. 3. 7. ~ 2019. 3. 22.

○ 공고내용

1. 제 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2. 당사자	성명(명칭)	(주)한덕원	법인등록번호	161511-0*****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2(신부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함.)			
4. 대상 부동산의 표시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산24-6외 3필지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징금 부과처분(예정금액 : 50,157,980원)			
6. 법 적 근 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5조 제1항			
7. 유 의 사 항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9. 3. 22.까지 방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기 관 명	영동군청	부 서 명	민원과
	주 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연 락 처	Tel: 043)740-3121 FAX: 043)740-3138		